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2

병해충위험분석 개요

Framework for pest risk analysis

(2007)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07. *Framework for pest risk analysis*.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2.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07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2007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89-09 TC-RPPOs가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주제를 추가(1989-002)

1990-10 전문가작업단이 초안 작성

1991-05 TC-RPPOs가 초안을 검토하고 토론을 진행

1991-11 전문가작업단이 초안을 수정

1992-05 TC-RPPOs가 초안을 수정하고 권고를 하지 못함

1993-05 TC-RPPOs가 초안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1994-05 CEPM-1이 초안을 수정하고 RPA 정의를 용어집에 추가할 것을 요청

1995-05 CEPM-2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1995-11 28차 FAO 총회가 기준을 채택

ISPM 2. 1995. *병해충위험분석 지침*. 로마, IPPC, FAO

1998-05 CEPM은 *ISPM No. 2 개정*을 주제로 추가 (1998-002)

1999-10 ICPM-2는 주제 추가

2001-05 ISC-3이 *ISPM 2 개정* 작업지시서 3을 승인

2002-04 ICPM-4은 높은 우선순위 주제를 인지

2003-05 SC-7은 작업지시서 3(rev 1)을 수정

2003-11 SC는 작업지시서 3(rev 2)을 수정

2004-01 전문가작업단이 기준을 수정

2004-04 SC가 기준과 작업지시서 3(rev 3)을 수정하고 전문가작업단으로
돌려보냄

2004-06 전문가작업단을 기준과 작업지시서 3을 수정

2005-04 SC가 기준을 수정하고 국제 식물 건강 위험분석 네트워크의 의견을 요청

2006-05 SC는 기준을 검토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어떤 수정도 없이)

2006-06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06-11 SC가 채택을 위하여 기준을 수정

2007-03 CPM-2가 수정된 기준을 채택

ISPM 2. 2007. *병해충위험분석 개요*. 로마, IPPC 사무국, FAO

2015-06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에서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2019-04 “오염” 용어와 파생어에 대하여 CPM-14은 인지하고 IPPC 사무

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9-04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배경

원칙

1. PRA 단계 1: 착수
 - 1.1 착수 시점
 - 1.1.1 경로 확인
 - 1.1.2 병해충 확인
 - 1.1.3 식물위생 정책 검토
 - 1.1.4 이전에는 병해충으로 알려지지 않은 생물체를 확인
 - 1.2 어떤 생물체를 병해충으로 결정
 - 1.2.1 병해충으로서의 식물
 - 1.2.2 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
 - 1.2.3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동정이 어려운 생물체
 - 1.2.4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1.2.5 특별한 이용을 위한 생물체의 수입
 - 1.3 PRA 지역의 규정
 - 1.4 이전의 PRA
 - 1.5 착수의 결론
2. PRA 2단계와 3단계의 요약
 - 2.1 연계된 기준들
 - 2.2 PRA 2단계 요약: 병해충위험평가
 - 2.3 PRA 3단계 요약: 병해충위험관리

3. 모든 PRA 단계에 해당 되는 공통사항
 - 3.1 불확실성
 - 3.2 정보 수집
 - 3.3 문서화
 - 3.3.1 일반적인 PRA 절차의 문서화
 - 3.3.2 개별 특정 PRA의 문서화
 - 3.4 위험 의사소통
 - 3.5 PRA에서 일관성
 - 3.6 부당한 지연 회피

부록 1: 병해충위험분석 흐름도

채택

이 기준은 1995년 11월 제28차 FAO 총회에서 “병해충위협분석 지침”으로 처음 승인되었다. 1차 개정은 2007년 3월 제2차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ssion on the Phytosanitary Measures)에서 현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본 기준은 IPPC의 범위 내에서 병해충위협분석(PRA)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는 PRA의 3개 단계를 - 착수, 병해충위협평가, 병해충위협관리 - 소개하고 있다. 본 기준은 착수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 수집, 문서화, 위험 의사소통, 불확실성, 일관성에 대한 일반적 사항도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WTO. 199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대한 협정.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PRA는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찾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도구이다. PRA 절차는 이전에는 병해충으로 인지되지 않은 생물체(식물, 생물방제제 또는 여타 유용 생물체,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같은), 알려진 병해충, 경로 및 식물위생 정책의 검토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3개 단계로 구성된다: 1: 착수; 2: 병해충위협평가; 그리고 3 병해충위협관리.

이 기준은 PRA 1단계에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PRA 2단계와 3단계를 요약하고, 전체 PRA 과정에 있어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PRA 과정을 다루고 있는 ISPM 3(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의 수출, 선적, 수입 및 방사를 위한 지침), ISPM 11(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협분석), ISPM 21(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협 분석)을 참고하고 있다.

특정 PRA 지역과 관련하여, 병해충위협평가를 위하여 고려될 수도 있는 생물체 또는 경로를 확인하거나, 또는 기존의 식물위생조치 검토의 일부로, PRA 과정 1단계가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확인한다. 어떠한 병해충도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분석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 1단계에서 확인된 병해충에 대한 분석은 다른 기준들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사용하여 2단계와 3단계로 계속된다. 불확실성과 일관성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문서화 그리고 위험관련 의사소통은 모든 PRA 단계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배경

PRA는 특정 PRA 지역에 대하여 식물위생조치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적 증거를 평가한다. 만일 병해충이라면, 분석은 생물학적 또는 다른 과학적 그리고 경제적 증거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 해당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가능성(probability)과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의 규모를 평가한다. 위험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위험을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석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 결과로서, 식물위생 규정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병해충위협관리 방안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일부 생물체의 경우, 병해충으로 이미 알려져 있지만, 다른 생물체의 경우에는 병해충인 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¹.

품목과 같이, 어떤 특별한 경로와 관련된 생물체의 유입으로 인한 병해충 위험 또한 PRA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품목 자체는 병해충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도, 병해충인 생물체를 운반할(harbour) 수도 있다. 착수 단계에서는 이러한 생물체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 다음 특정 생물체를 개별적으로,

¹ IPPC는 병해충을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로운 식물, 동물 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의 종, 계통(strain) 또는 생태형(biotype)”으로 정의하고 있다. “병해충”이란 용어는 재배/관리되거나 또는 재배되지 않거나/관리되지 않는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하거나, 간접적으로 식물에 영향하거나 또는 다른 생물체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식물에 영향하기 때문에 병해충인 생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는 개별 종들이 공통의 생물학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룹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품목 자체가 병해충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품목으로 수입된 생물체(예로 재식용 식물, 생물방제제, 기타 유용 생물체,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새로운 지역의 계획된 서식지에 의도적으로 유입·정착시켰을 때, 그 생물체가 뜻밖으로 계획되지 않은 서식지로 확산되어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 또한 PRA 과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PRA 과정은 IPPC의 범위에 따라, 재배 식물과 야생 식물상에 있는 병해충에 적용된다. IPPC의 범위를 넘는 위험의 분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국제 협약의 조항들도 위험평가를 다룰 수도 있다(예, 생물다양성 협약과 Cartagena 생물안전성 조약).

PRA의 구조

PRA 과정은 3단계로 구성된다.

- 1단계 : 착수
- 2단계 : 병해충위험평가
- 3단계 : 병해충위험관리

정보 수집, 문서화, 위험 의사소통은 PRA 전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PRA 전체 분석을 수행할 때, 다양한 단계 사이를 앞뒤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방향의 과정일 필요는 없다.

본 기준의 개정

개정된 ISPM 2에서는 특별하게 다음 문제를 다루고 있다:

- IPPC 1997년 개정안과 일치
- ISPM 3, 11 그리고 21에 나타난 것처럼, PRA 범위와 절차에 대한 진전된 개념의 발전과 일치하는 문구
- PRA 과정의 설명에 있어 규제비검역병해충(RNQP)을 포함
- PRA 과정의 설명에 있어 이전에 병해충으로 알려지지 않은 생물체를 포함
- PRA의 설명에 있어 모든 PRA 단계에 공통된 측면을 포함

따라서, 본 기준은 PRA 1단계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모든 PRA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PRA 2단계와 3단계를 통한 이후의 분석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른 ISPMs를 참고하고 있다(Table 1). 이 기준은 개념적인 것으로, 평가자를 위한 상세한 운영 또는 방법론적인 지침은 아니다. 전체 PRA 과정의 개요는 부록 1에 도해하였다.

PRA관련 IPPC 조항

IPPC(1997, VII.2(a))에서는: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적 고려에 의해 필수적이고,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 이 조 1항에 명기된 어떠한 조치[즉, 식물위생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VI.1(b)항은 식물위생조치에 대하여: “식물 건강의 보호 및/또는 용도의 보호 장치(safeguard)에 필요하며, 관련 체약국에 의해 기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에 한해 제한됨”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정당한”은 II.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적절한 병해충 위험분석이나, 적용 가능한 경우 다른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비교 조사 및 평가를 이용하여 도달한 결론에 근거하여 정당한”

IV.2(f)는,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의 책임은 “병해충위험분석의 수행”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규정의 공표는 IPPC 체약국의 책임(IV.3(c))이지만, 체약국은 이러한 책임을 NPPO에 위임할 수도 있다.

PRA를 수행함에 있어, IPPC에서 설정된 의무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PRA 절차에 특별하게 해당 되는 사항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정보 제공 협력
- 최소 영향
- 비차별
- 조화
- 투명성
- 부당한 지연 회피

요건

1. PRA 1단계 : 착수

착수는 정해진 PRA 지역과 관련하여 병해충위험평가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생물체와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다.

PRA 과정은 다음의 상황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착수 시점, section 1.1):

-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어떤 경로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된 경우
- 식물위생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병해충이 확인된 경우
- 식물위생조치 또는 정책을 검토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된 경우

착수 단계는 4개 과정을 포함한다:

-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결정 (section 1.2)
- PRA 지역을 규정 (section 1.3)
- 이전 PRA를 평가 (section 1.4)
- 결론 (section 1.5)

어떤 경로에 대한 고려 요청에 의하여 PRA 과정이 시작되었을 경우, 해당 경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생물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위의 과정보다 우선한다.

이 단계에서, 생물체와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²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 생물체에 대한 기타 유용한 정보에는 지리적 분포, 기주 식물, 서식지와 품목과의 관련성(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RNQPs) 후보의 경우 재식용 식물과의 관련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 경로의 경우, 운송 방법과 최종 용도를 포함한 품목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1.1 착수 시점

² 이 사항에 대한 추가의 정보는 ISPM 5의 보충서 2(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의 이해와 환경적 고려에 대한 참고를 포함한 관련 용어에 관한 지침)에서 제공되어 있다.

1.1.1 경로 확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경로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수정된 PRA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 이전에 수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지역로부터의 품목의 수입이 제안됨
- 잠재적으로 병해충의 기주가 될 수 있는, 이전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식물 종 또는 품종을 선발 및/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품목의 수입이 아닌 경로가 확인됨 (자연적인 확산, 포장재, 우편물, 쓰레기, 퇴비, 여행객 휴대품 등)
- 어떤 병해충에 대한 식물의 감수성의 변화가 확인
- 어떤 병해충의 병원성/공격성(aggressiveness) 또는 기주범위의 변화

이러한 상황은 품목 자체는 병해충이 아닌 경우이다. 품목 자체가 병해충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Section 1.1.4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확실하게 병해충으로 확인되지 않은 생물체를 포함하여, 해당 경로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병해충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PRA가 실시될 경우, 실제 병해충 발견 기록이, 연관된 병해충 목록 작성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1.1.2 병해충 확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확인된 병해충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개정된 PRA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 새로운 병해충에 감염 또는 발생이 발견됨
- 과학적 연구에 의해 새로운 병해충이 확인
- 어떤 병해충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됨
- 어떤 생물체가 다른 알려진 병해충의 매개체로 확인됨
- PRA 지역에서 병해충 상태 또는 발생 정도(incidence)에 변동이 있음
- 수입된 품목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됨
- 수입 시 어떤 병해충이 반복적으로 발견됨
- 연구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특정 병해충의 수입이 제안됨

이러한 경우, PRA 2단계를 준비하면서, 해당 생물체가 병해충으로 알려졌

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1.3 식물위생 정책 검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또는 개정된 PRA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식물위생 규정, 요건 또는 운영에 대한 국가적 검토가 수행됨
- 특정 RNQPs이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할 경제적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적 방제 프로그램(예, 식물위생 요소들을 포함하는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함
-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규제 제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
- 이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과정 또는 절차가 도입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가용해짐(예, 모니터링 결과; 새로운 소독 처리 또는 어떤 소독처리의 철회; 새로운 진단법)
-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남
- 한 국가 내에 식물위생 상황이 변하거나 정치적 국경이 변함

이러한 상황들에서, 병해충은 이미 규명되어 있을 것이고, PRA 2단계를 준비 과정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야 한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새로운 또는 예기치 않은 식물위생 상황이 확신되지 않는 한, 개정 또는 신규 PRA가 완료 될 때까지 새로운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4 이전에는 병해충으로 알려지지 않던 생물체를 확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물체에 대한 PRA를 고려할 수도 있다:

- 재배, 편의시설 또는 환경적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식물 종 또는 품종을 수입하기 위한 제안이 있음
- 생물방제제 또는 여타 유용생물체를 수입 또는 방사하기 위한 제안이 있음
- 완전하게 명명 또는 묘사되지 않았거나 동정하기 어려운 생물체가 발견됨
- 연구, 분석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한 제안이 있음
- LMO를 수입 또는 방사하기 위한 제안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체가 병해충인 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PRA 2단계를 대상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Section 1.2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2 어떤 생물체를 병해충으로 결정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를 다루기 위하여 때로는 사전 선정(pre-selection) 또는 스크리닝(screening)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사용되는 생물적 정보 및 기타 정보가 대상 생물체에 적절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물체의 분류학적 특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일 그 생물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명명되지 않았거나 묘사되지 않았다면, 병해충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정이 가능하고,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일관되게 피해를 유발하며(예, 병징, 감소된 성장률, 수확량 감소 또는 기타 다른 피해), 전염성 또는 확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PRA에서 고려되는 생물체의 분류 수준은 일반적으로 종(species)이다. 이보다 상위 또는 하위의 분류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종 이하의 수준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는 병원성(virulence), 약제 저항성, 환경 적응성, 기주범위 또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과 같은 인자들에서 중요한 변이가 보고되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생물체의 예측 지표(predictive indicators)는, 발견된다면 그 생물체가 병해충일 수도 있다는, 특징(characteristics)이다. 어떤 생물체의 정보는 이와 같은 지표에 대입하여 점검되어야 하고, 그러한 지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생물체는 병해충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기록함으로써 분석이 종료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전의 역사
- 식물병원적 특성
- 식식성(phytophagous) 특성
-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전이지만, 식물, 유용생물체 등의 피해에 대한 관찰과 연계되어 존재가 검출됨

- 일반적으로 알려진 병해충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군(과 또는 속)에 속함
- 이미 알려진 병해충에 대한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 식물에 유용한 비표적 생물체(예, 화분 매개충 또는 식물 병해충의 포식자)에 미치는 악영향

특정 분석 사례에는 식물 중, 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 충분히 명명되거나 묘사되지 않은 생물체, 동정이 어려운 생물체, 의도적으로 수입되는 생물체 및 LMOs가 포함된다. LM-plants의 병해충 잠재성은 section 1.2.4에 정리된 것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1.2.1 병해충으로서의 식물

식물류는 수천년 동안 국가 간 그리고 대륙 간 의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재배, 편의시설 또는 환경적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종 또는 품종들이 계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자연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된 일부 식물 종 또는 품종은, 당초 방출된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으며, 경작지, 자연적 또는 준자연적인 서식지와 같은 의도되지 않은 서식지를 침입하여 병해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종용 종자, 식용 또는 사료용 곡류, 양모, 토양, 기계류, 장비, 운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균형수(ballast water)의 오염 병해충으로, 병해충으로서의 식물들이 비의도적으로 어떤 국가로 유입될 수도 있다.

병해충으로서의 식물은 물, 빛, 광물질 등에 대하여 경쟁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기생으로 다른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결과 다른 식물을 억제 또는 제거한다. 또한, 수입 식물은 이종교배를 통해 재배 중에 있거나 야생 식물상에 있는 다른 식물 개체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병해충이 될 수도 있다. 추가의 정보는 ISPM 11의 환경적 위험에 대한 보충서에 제공되어 있다.

어떤 식물 종이 PRA 지역에서 병해충이 될 수도 있는 일차적인 지표는, 그 식물 종이 다른 곳에서 병해충으로 기록된 보고의 존재이다. 어떤 식물 종이 병해충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본질적인 특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광범위한 생태 조건에 대한 적응성

- 식물상에서 강력한 경쟁력
- 높은 번식률
- 지속적인 토양-종자은행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
- 영양번식체(propagule)의 높은 이동성
- 타감작용(他感作用; allelopathy)
- 기생 능력
- 이종교배 능력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이 없는 식물도 병해충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새로운 식물 종의 유입과 그 식물이 병해충이라는 증거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간격이 관찰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1.2.2 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

생물방제제와 기타 유용생물체는 식물에 유익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PRA를 수행할 때 주요한 관심은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찾는 것이다³. 다른 우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유용생물 배양체의 오염으로 다른 종이 존재하여, 그 배양체가 병해충의 경로로 작용하는 경우
- 확산억제 시설(containment facilities)이 요구될 경우, 시설의 신뢰성

1.2.3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동정이 어려운 생물체

수입된 화물에서 또는 예찰 중에, 충분히 명명 또는 설명되지 않았거나, 동정이 어려운(예, 손상된 시료 또는 확인 불가능한 생활사(life stages)) 생물체가 검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식물위생 활동이 정당화되는 지에 대한 결정과 식물위생조치의 권고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매우 제한되었더라도, 가용한 정보를 이용한 PRA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접근 가능한 대조표본 소장처(reference collection)에 보관할 것이 권장된다.

1.2.4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LMOs는 현대 생물공학기술을 사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또는

³ ISPM 3은 NPPO가 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생물체의 수입 또는 방사 이전에 PRA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변형된 특징을 발현시키도록 계획된 새로운(novel) 조합의 유전 물질을 가진 생물체이다. PRA를 수행할 수도 있는 LMOs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농업, 원예 또는 임업, 토양의 생물정화(bioremediation)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적 목적 또는 치료적인 매개체로서의 식물(예, 비타민 함량이 증가된 LMO 식물)
-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형된 생물방제제 및 여타 유용생물체
- 병원성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변형된 병해충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생물체에는 변형되지 않은 수혜자(recipient) 또는 제공자(donor)인 생물체 또는 유사한 생물체가 현재 가진 것 이상의 병해충 위험을 나타내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위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정착과 확산 잠재력의 증가
- 유전자 서열의 삽입으로 인하여,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진 생물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음
- 그 생물체의 순화된(domesticated) 종 또는 야생의 연관 종에 유전자 서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여, 해당 관련 생물체의 병해충위험을 증가시킬 잠재력
- 변형된 식물 종의 경우, 유해한 유전적 서열을 연관종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잠재력

일반적으로 PRA는 유전 형질보다 표현 형질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LMOs의 병해충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유전적 형질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LMOs에 더욱 특이적인 예측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특성이 포함된다:

- 이미 알려진 병해충 종에 대한 표현형적 유사성 또는 유전적 관계
- 유입 또는 확산 잠재력이 증가될 수도 있는, 적응 특성에서 변화가 생김
- 표현형적 그리고 유전형적 불안정성

LMOs의 경우 구분(identification)은, 수혜 및 기증 생물체의 분류학적 지위, 매개체에 대한 설명, 유전적 변형의 특성, 그리고 유전자 서열과 수혜 계통에 삽입된 위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추가로 LMOs의 잠재적 위험성은 ISPM 11 부속서 3에 정리되어 있다. LMO가 병해충인지를 결정하고, 이어서 병해충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PRA가

수행될 수도 있다.

1.2.5 특별한 이용을 위한 생물체 수입

과학적 연구, 교육, 산업적 또는 여타의 목적을 위하여 병해충일 수도 있는 어떤 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생물체의 속성(identity)이 확실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 생물체가 병해충일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생물체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생물체에 대한 정보가 평가될 수도 있다. 병해충으로 판명된 생물체의 경우, 병해충위험평가가 수행될 수도 있다.

1.3 PRA 지역의 규정

PRA가 언급하는 지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일 수도 있다. 정보는 보다 넓은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수집될 수도 있지만, 정착과 확산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규정된 PRA 지역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PRA 2단계에서는, 위험에 처한 지역이 확인된다. 하지만, PRA 3단계에서 규제되는 지역은 기술적으로 정당화되고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험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4 이전의 PRA

새로운 PRA를 수행하기 이전에, 당해 생물체, 병해충 또는 경로가 이전의 PRA 대상이었던 지를 결정하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 주변 환경과 정보가 변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분석의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PRA 지역의 적합성(relevance)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생물체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유사한 생물체, 병해충 또는 경로에 대한 PRA를 활용할 가능성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와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PRA를 대체할 수는 없다.

1.5 착수의 결론

PRA 1단계의 마지막에서는, 우려 병해충과 경로가 확인될 것이고 PRA 지역이 규정된다. 관련 정보가 수집될 것이며, 병해충은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경로와 연관되어 추가적인 평가 후보로 확인될 것이다.

병해충이 아니거나 병해충을 운반하지 않는 경로로 결정된 생물체는 더 이상 평가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정과 논리적 근거는 적절히 기록되고 의사소통되어야 한다.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절차는 PRA 2단계로 계속될 것이다. 어떤 경로에 대하여 확인된 병해충 목록이 작성되면, 병해충들은 생물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경우 그룹으로, 또는 분리하여 평가될 수도 있다.

특히, 어떤 병해충을 검역병해충으로서 규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PRA일 경우, ISPM 11의 병해충위험평가(PRA 2단계)의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ISPM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생물체에 관련된다:

- PRA 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한다면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공적 방제 대상 또는 공적 방제를 고려하고 있음
- PRA 지역에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유해성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짐
- PRA 지역에서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어떤 병해충을 RNQP로서 규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특히 목적을 둔 PRA일 경우, ISPM 21 병해충위험평가(PRA 2단계)의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ISPM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생물체에 관련된다:

- PRA 지역에 존재하며 공적 방제 대상 또는 공적 방제를 고려 중
- PRA 지역에서 재식용 식물이 해당 병해충의 주요 경로임
- PRA 지역에서 재식용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2. PRA 2단계와 3단계의 요약

2.1 연계된 기준들

각기 다른 병해충 분류(categorization)를 위한 PRA 과정은 별도의 ISPMs에 기술되어 있고,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주변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들이 개발될 수도 있으며, 개정될 수도 있다.

Table 1 : ISPM 2와 연계된 기준들

ISPM	PRA 범위
ISPM 11	<u>검역병해충 PRA</u> 에 관한 지침으로 다음을 포함: - 1단계 : 착수 ¹ - 2단계 : 환경적 위험과 LMO 평가를 포함한 <u>병해충 위험평가</u> - 3단계 : <u>병해충위험관리</u>
ISPM 21	<u>규제비검역병해충 PRA</u> 에 관한 지침으로 다음을 포함: - 1단계 : 착수 ¹ - 2단계 : 특히, <u>재식용 식물</u> 의 주요 <u>감염원</u> 으로서, 그리고 <u>용도</u>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u>병해충위험평가</u> - 3단계 : <u>병해충위험관리</u>
ISPM 3	<u>생물방제제</u> 와 <u>유용 생물체</u> ² 에 대한 <u>병해충위험관리</u> 에 대한 특정 지침

1 ISPM 11과 ISPM 21은 각각 검역병해충과 RNQPs의 PRA 1단계에 대한 일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2 ISPM 3은 PRA 1단계에 해당하는 더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정 당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문서화와 의사소통 제공 관련.

2.2 PRA 2단계 요약 : 병해충위험평가

2단계는 여러 단계들을 포함한다:

- 병해충 분류 : 해당 병해충이 각각 검역병해충 또는 RNQPs의 특징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결정
- 유입과 확산 평가
 - 검역병해충 후보: 위험지역의 확인 그리고 유입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
 - RNQPs 후보: 해당 재식용 식물이 당해 그 지역의 다른 감염원과 비교하여서 현재 또는 미래에 주요한 병해충 감염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

- 경제적 영향 평가:
 - 검역병해충 후보: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의 평가
 - RNQPs 후보: PRA 지역에서 해당 재식용 식물의 용도와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감염 임계치와 허용 수준에 대한 분석 포함)
- 결론,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유입, 확산 그리고 잠재적 경제 영향에 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하고, RNQPs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에 관한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전체적인 병해충위험을 요약

병해충위험평가로부터 나온 결과는 병해충위험관리 단계(3단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3 PRA 3단계 요약 : 병해충위험관리

3단계에는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식물위생조치(단일의 또는 다른 것과 조합된)를 규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병해충위험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거나,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예; 자연 확산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식물위생조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체약국들은 장래에 위험도가 변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해충위험 관련 낮은 수준의 모니터링과 감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병해충위험관리 단계의 결론은, 병해충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시키는데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들이 현재 가용한 지, 비용-효과적인지, 실행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PRA에 관한 기준들에 덧붙여서(Table 1), 다른 기준들에서는 병해충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특정 기술적 지침을 제공한다.

3. 모든 PRA 단계에 해당 되는 공통 사항

3.1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위험의 구성 요소이므로, PRA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PRA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근원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또는 모순되는 데이터; 생물 시스템의 자연적인 변이성; 분석의 주관성(subjectiveness); 무작위 표본 추출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불확실한 원인 및 근원(origin)을 가진 병징 그리고 병징이 없는 병해충 운반체(carrier)들은 특별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분석에서 불확실성의 특성과 정도가 문서화되고 의사소통 되어야 하며, 전문가 판단의 사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조치를 추가 또는 강화할 것이 권고된 경우, 이를 기록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문서화는 투명성에 기여하고 연구 필요성 또는 우선순위를 규명할 때에도 유용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은 PRA의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PRA에 근거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인한 식물위생 상황을 모니터하고, 이전의 결정들을 재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3.2 정보 수집

PRA 과정 전체를 통해서, 권고사항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조사와 발견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학적 간행물이 타당할 수도 있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의 빈틈(gap)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연구가 필수적일 수 있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확정적이지 않을 경우, 적절할 경우, 전문가 판단이 사용될 수도 있다.

공적인 연락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데 협력하는 것은 IPPC 의무이다(VIII.1(c)와 VIII.2). 다른 체약국들에게 정보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구체적이고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에만 국한하여야 한다. 분석에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접촉할 수도 있다.

3.3 문서화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국들은 식물위생 요건의 기술적 정당성을 접근 가능하도록(available) 해야 한다고 투명성 원칙은 요구한다. 따라서, PRA는 충분히 문서화 되어야 한다. PRA의 문서화에는 2가지 수준이 있다:

- 일반적인 PRA 과정을 문서화

- 이루어진 개별 분석을 문서화

3.3.1 일반적인 PRA 절차의 문서화

NPPO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PRA 과정의 절차와 기준(criteria)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3.3.2 개별 특정 PRA의 문서화

각각의 특정 분석에 대하여, 착수부터 병해충위험관리까지 전 과정이 충분하게 문서화 되고, 그래서 관리 방안 결정을 내리게 된 정보의 출처와 논리적 근거가 확실히 문서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PRA가 반드시 길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 PRA 과정에서 단지 제한된 수의 단계만 완료한 후, 정당화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짧고 간결한 PRA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문서화 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PRA의 목적
- 대상 생물체 구분
- PRA 지역
- 생물체의 생물적 특성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증거
- 검역병해충의 경우: 병해충, 경로, 위험지역
- RNQPs의 경우: 병해충, 기주, 식물 및/또는 고려 중에 있는 식물의 부분 또는 부류(class), 감염원, 식물의 용도
- 정보 출처
- 불확실성의 본질 및 정도,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예상(envisaged)하는 조치
- 경로로 인해 착수된 분석의 경우: 품목의 설명과 분류된 병해충 목록
-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의 증거
- 병해충위험평가 결론 (가능성 및 결과)
- PRA 과정 중단에 결정과 정당성
- 병해충위험관리: 식물위생조치의 구명, 평가, 및 권고
- 완료 일자 및 적절한 경우 저자, 기여자, 검토자의 성명을 포함한 분석에 책임이 있는 NPPO

문서화되는 기타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⁴:

- 제안된 식물위생조치들의 효과를 모니터할 특별한 필요성
- IPPC의 범위를 벗어나며, 다른 기관들과 의사소통 되어야 할 것이 확인된 유해성

3.4 위험 의사소통

일반적으로, 위험 의사소통은 NPPO와 이해당사자들 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인지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일방향의 정보 이동 또는 이해당사자가 위험도 상황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과학자, 이해당사자, 정치인 등의 견해를 조정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 병해충위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달성
- 신뢰할 만한 병해충위험관리 방안 개발
- 병해충위험을 다루기 위한 신뢰할 만하고 일관된 규정과 정책을 개발
- 고려 하에 있는 식물위생 사항에 대한 인식 증진

PRA의 종료에는, PRA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안된 위험 경감 및 불확실성이, 적절하다면 다른 체약국들, RPPOs 그리고 NPPOs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다른 관심 있는 대상들과 의사소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A 결과로 식물위생 요건, 제한 또는 금지가 채택된다면, 해당 체약국은 즉시 이를 공표하고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체약국들에게 전달 하여야 하며(IPPC VII.2(b)에 따라), 요청이 있다면 어떤 체약국에게든 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IPPC VII.2(c)에 따라).

PRA 결과, 식물위생 요건, 제한, 또는 금지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체약국 들은 이 정보가 유용하도록 만들 것이 권장된다.

NPPO는 병해충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hazards)의 증거(예, 동물 또는 사람 건강에 대한 위험)를 관련 당국에 전달할 것이 장려된다.

3.5 PRA에서 일관성

⁴ ISPM 3은 이와 같은 생물체와 관련한 추가의 문서화 요건을 목록화하고 있다.

NPPO는 PRA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성을 추구할 것이 권고된다. 일관성은 다음을 포함한 수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 비차별과 투명성의 원칙 촉진
- PRA 절차에 대한 친밀도 개선
- PRA 완료 및 관련 자료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유사한 산물 또는 병해충에 대해 수행된 PRA간 비교를 개선하여, 유사한 또는 동등한 관리 방안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

일관성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결정 기준 설정, 절차별 단계, PRA 수행자의 훈련 그리고 PRA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장될 수도 있다.

3.6 부당한 지연 회피

다른 체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NPPO는 요청이 있을 경우, 부당한 지연 회피를 고려하여, 개별 분석 완료에 관한 정보와, 가능할 경우, 예측되는 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ISPM 1: 국제 교역에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식물위생 원칙).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이며 이 기준의 규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부록 1: 병해충위험분석 흐름도

